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4년 5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- 나. 신용정보업감독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
- 라.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제정에 따른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사항 변경)

나. 신용정보업감독규정 (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경영업무 추가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4/4/30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이 재제정됨에 따라,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(제5-18조 제4항 제2호)

—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

나. 신용정보업감독규정 (2024/4/17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,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·활용을 확대하고, 마이데이터사업자·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확대, 데이터결합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신용정보 범위 확대(제2조의2)

— 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 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,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추가(제13조의3)

-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업무를 추가

□ 데이터전문기관 이해상충 방지장치 보완(제15조의2)

- 데이터전문기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 후 자체 이용할 경우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의무화

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추가(제26조의5)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업정보 분석 지원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업무근거 마련

□ 신용정보의 등록·이용기준 규정(별표 6)

- 성실경영평가 정보, 금융거래 사전차단 신청정보 등의 등록기관, 등록시기, 이용기관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기준 개정)
- 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상장)
- 다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신규상장에 따른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)
- 라.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(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인정 제도 정비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4/4/3 개정 · 2024/4/8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고,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

2) 주요 내용

-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(별표 2의2)
 -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에 대한 점검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변경 반영(별표 11)
 - 통계청은 제11차 개정 고시(제2024-2호, 2024.1.1)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
 - 이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1의 '업종 및 코드 분류표'를 개정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
나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4/5 개정 · 2024/4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글로벌 세그먼트 구성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요 충족 및 ETP 등 연계상품 확대 촉진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을 상장
-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규칙 개선,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, 주식선물의 호가유형 확대, 시세 등의 공표범위 개선,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의 가격변동률 범위 확대를 추진
 - 더불어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협의거래의 대상상품 · 신청시간 · 신청시한 확대 및 해당 거래의 가격범위를 개선
-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섹터지수 · 주식선물의 거래기간, 결제월 수 및 해당 거래로 구성된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수를 축소
- 주식선물 · 옵션 상장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된 주권을 기초로 한 주식선물 · 옵션의 조기 거래종료 근거 신설 및 최종거래일 변경 관련 조문 정비를 추진

2) 주요 내용

- 가)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상장(제4조의6, 제4조의7, 제4조의8, 제4조의9, 제46조, 제73조, 제162조의2, 별표1, 별표1의2, 별표6, 별표6의2, 별표7, 별표17의2, 별표19, 별표19의2, 별표26, 별표28, 별지 제13호의3, 별지 제13호의4)
- 코스닥글로벌 세그먼트 구성종목에 대한 위험관리 수요 충족 및 연계상품 확대 촉진을 위해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을 상장
 - 기초자산은 코스닥글로벌지수로 하며, 거래승수는 지수의 수준 및 기존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1만으로 설정
 - 「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 한 법인의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2022년 11월 18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
 - 결제월의 수는 단기 헤지수요를 고려하여 분기월 4개(거래기간은 1년)로 하며, 호가가격단위는 지수의 변동성 수준을 고려하여 0.10포인트로 설정
 -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, 최종결제방법은 현금결제 방식이며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코스닥글로벌지수의 최종 수치

[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관련 기타 주요내용]

구분	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	조문
선물스프레드 종목 수	3개	제46조
호가의 입력제한	지정가호가만 허용	제50조
협의대량거래 신청 수량	최근월종목 : 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최근월외 종목 : 거래수량단위(1계약) 이상 5,000 계약 이하	제67조의4, 별표 26
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	2만계약 (개인투자자: 1만계약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: 10만계약)	제162조의2
기초자산기준가격	전일의 최종 코스닥글로벌지수	별표 1
종목코드	AG	별표 6
호가수량한도	1,000계약	별표 17의2
거래시간	09:00~15:45 (최종거래일 09:00~15:20)	제3의3, 별표 1의2
계약당선물스프레드 증거금률	거래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 : 2.0% 위탁증거금 : 3.0%	별표 19
계약당최소증거금액	1만원	별표 19
계약당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률	3.0%	별표 19의2

나)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(제14조, 제47조, 제49조의2, 제50조, 제63조, 제64조, 제67조의4, 제69조, 제71조, 제72조의2, 제72조의3, 제79조, 별표 2, 별표 25, 별표 26)

□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규칙 개선(제14조, 별표 2)

- 기초주권별 변동성을 반영하여 행사가격 개수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거래 유동성 집중을 위하여 원월물의 행사가격 간격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
 - 매 거래일마다 등가격 × (1 ± 거래증거금률)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격을 설정하되, 1근월물~3근월물은 등가격 포함 9개, 4근월물~6근월물은 등가격 포함 3개를 최소 행사가격 수로 함

□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(제47조, 제49조의2, 제50조, 제63조, 제64조)

- 선물스프레드거래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를 허용하여 거래시간을 확대
 - 이 경우 최근월종목의 의제약정가격은 단일가호가시간 개시 전의 최근월종목의 직전약정가격으로 설정

□ 주식선물 호가유형 확대(제50조)

— 주식선물에 허용되는 호가유형을 현행 지정가호가에서 모든 호가 유형(지정가, 시장가, 조건부지정가, 최유리지정가)으로 확대

□ 시세 등의 공표범위 개선(제79조)

— 가격발견기능 및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일가호가 시간의 3단계 예상우선히가에 대한 정보를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공표

[시세 등 공표범위 개선 세부사항]

구분	기존	개정
단일가 호가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상체결가격, <신 설> - <신 설> - 총호가수량 · 총호가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상체결가격, <u>예상체결수량</u> - <u>3단계 예상우선히가의 가격 · 수량</u> - 총호가수량 · 총호가건수

□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가격변동률 범위 확대(별표 25)

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의 가격변동폭 산출변수 중 주식선물에 대한 가격변동률을 주식시장의 동적VI 발동률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당 가격변동률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

- (동적VI 발동률)코스피200 구성종목 : 3%, 그 외 종목 : 6%
- 가격변동률 범위 (기존) 3% 이상 5% 이내 → (개정) 3% 이상 6% 이내

□ 금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허용(제67조의4, 별표 26)

— 협의대량거래 제외 대상에서 금선물스프레드거래를 삭제하여 협의대량거래를 허용하고 신청수량을 금선물거래와 동일하게 설정

□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 개선 및 신청시한 확대(제69조, 제71조, 별표 26)

— 협의대량거래의 거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가격범위 유연성을 확대하고, 협의대량거래 신청시한과 지체사유에 대한 기록 · 보관의무를 주식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하여 제도의 정합성 제고

- 가격범위 유연성 (기존) 협의대량기준가격±협의대량가격제한폭 범위 내 → (개정)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

□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범위, 신청시간 및 시한 변경(제72조의2, 제72조의3)

—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범위, 신청시간 및 신청시한을 협의대량거래와 일치시켜 협의거래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, 주식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지체사유에 대한 기록 · 보관 의무를 부여

다)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(제4조의7, 제8조의4, 제46조)

□ 섹터지수 · 주식선물의 거래기간 및 결제월 수 축소(제4조의7, 제8조의4)

- 섹터지수 · 주식선물의 거래 유동성 집중을 위하여 현행 최장 3년인 거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결제월 수를 각각 4개 및 6개로 축소

[거래기간 및 결제월 수 축소 세부방안]

구분	거래기간		결제월 수	
	기존	개정	기존	개정
섹터지수 선물	1년(3월종목, 9월종목), 2년(6월종목), 3년(12월종목)	1년 (3월 · 6월 · 9월 · 12월종목)	7개	4개
주식선물	3개월(비분기월종목), 1년(3월종목, 9월종목), 2년(6월종목), 3년(12월종목)	3개월 (비분기월종목), 1년 (3월 · 6월 · 9월 · 12월종목)	9개	6개

□ 섹터지수 · 주식선물스프레드의 종목 수 축소(제46조)

- 섹터지수 · 주식선물의 결제월 수 축소를 반영하여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 수를 각각 3개 및 5개로 변경

라) 주식선물 · 옵션 상장관리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(제11조)

□ 기초주권에서 제외된 주권을 기초로 한 주식선물 · 옵션의 조기 거래종료 근거 신설

- 기초주권에서 제외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· 옵션이 장기간 거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, 해당 주식선물 · 옵션의 조기 거래종료가 가능하도록 최종거래일의 변경 근거를 마련

□ 주식선물 · 옵션 최종거래일 변경 관련 조문 정비

- 상장폐지 · 관리종목 · 분할 · 합병 등 기초주권 이벤트 발생 시의 주식 선물 · 옵션 최종거래일 변경 및 거래제한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가독성 및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제고

다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4/4/12 개정·2024/4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의 신규상장 예정(2024.4.22.)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- 시장조성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등의 정보를 거래소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장조성자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등의 정보를 거래소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 및 합의서 양식 신설(제7조 및 별지 제6호 서식)
-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 거래소에 즉시 보고할 의무 신설(제16조)
- 「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 평가 기준」에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의 기간의무이행률 등 시장조성 의무부여 방식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 추가 등(별표 2 및 별표 4)

[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의무평가 관련 지표 등]

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의무평가 관련 지표	
기간의무이행률	80%
일중의무이행률	80%
연계상품	코스닥150선물

- 신규 시장조성 등으로 인해 시장조성자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(별표 5)

라.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(2024/4/29 개정 · 2024/4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· 유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인정 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의 객관성 ·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인정 제도 정비(제5조, 제5조의2, 제6조, 제8조)
 -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관을 ESG 평가기관 협의체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, 2개 이상 복수 기관의 평가 등급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정 · 유지 여부를 판단
 -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 9월 발족한 자율규제기구로 현재 소속 기관은 서스틴베스트, 한국ESG기준원, 한국ESG연구소 (3개 기관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주문착오방지를 위한 경고·보류기준 제시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4/4/9 개정 · 2024/4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 신규 상장 예정(한국거래소 2024.4.22.)에 따라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경고·보류기준을 제시하기 위함
 -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i)금액, ii)수량, iii)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(경고기준) 또는 책임자 승인(보류기준)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

2) 주요 내용

- 신규 상장되는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의 경고·보류 기준을 기존 KOSDAQ150선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(별표1 개정)
 - 주문수량에 대한 경고(300계약 초과~500계약 이하)·보류(500계약 초과) 또는 주문가격에 대한 경고(50틱 초과~100틱 이하)·보류(100틱 초과) 기준 적용
 - 코스닥글로벌지수선물과 기존 KOSDAQ150선물의 기초자산 및 거래제도 유사성 반영
 - 코스닥글로벌지수는 코스닥시장 내 대형·우량 혁신기업을 구성종목으로 함(2022년 코스닥 5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지수 발표)
 - 거래승수(10,000), 호가가격단위(0.10포인트), 최소가격변동금액(1,000원) 등 동일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